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325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덕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23.

주 문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 경북 고령군 B 임야 28,562㎡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에 설치한 송전용 철탑과 C 임야 233㎡ 중 같은 도면 제2항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에 설치한 송전용 철탑을 각 철거하라.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8,068,309원, 선정자 D, E, F, G, H, I (이하 '선정자들'이라 하며,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27,733,7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망 J(2011. 4.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2017. 6.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K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사업명: L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19. 망인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M 임야 46,017㎡(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경북 고령군 N 임야 17,358㎡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고, 2018. 3. 7.경 위 N 토지는 경북 고령군 C 임야 233㎡(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N 임야 17,125㎡(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N 토지 및 C 토지에 관하여 2019. 1. 25. 각 2011. 4.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7)가 마쳐졌고, 한편, 망인은 1970. 4. 30. 경북 고령군 ○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하고, 이 사건 M 토지, 이 사건 ○ 토지, 이 사건 N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등기기록상 소유자는 망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이 사건 N 토지 및 이 사건 C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1. 수용개시일 및 사용개시일을 2018. 12. 12.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 사건 C 토지) 및 사용재결(이 사건 N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P	망인	722,300원	이 사건 C 토지
Q		1,492,050원	구분지상권(이 사건 N 토지 상공 19m~83m)

라. 피고는 2018.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3168, 3169호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합계 2,115,880원[= 1,393,580원(= 이 사건 N 토지의 손실보상액 1,492,050원 - 소득세 89,520원 - 주민세 8,950원) + 이 사건 C 토지의 손실보상액 722,3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기하여 2019. 1. 25.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18. 12. 1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이 사건 N 토지

목 적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일부 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1715m² 지표면의 상공 19미터에서 83미터까지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2018년 12월 12.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구분지상권존속기간의 총 지료 일금 1,492,050원

지상권자 피고

피고는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도 2020. 1. 29.에 2020. 1. 2.자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범위를 토지의 일부 중앙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2,120m² 지표면의 상공 19미터에서 81미터까지의

공중공간, 존속기간을 2020. 1. 2.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N 토지에 마쳐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M 토지에 마쳐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합5041호로 이 사건 M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료적치장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기 위한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9. 5. 1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법원

2019카합5148호로 이 사건 N 토지 중 일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기 위한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9. 12.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위 각 가처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재결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이의신청기한을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아.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은 2023. 2. 8.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합2 가처분취소사건, 같은 법원 2023카합1 가처분취소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 15, 16, 20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M 토지 및 N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사용하여 이 사건 C 토지와 경북 고령군 B 임야 28,562㎡(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는바, 피고가 위 각 토지 지상에 설치한 송전탑 공사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B 토지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에 설치한 송전용 철탑과 이 사건 C 토지 중 같은 도면 제2항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3㎡에 설치한 송전용 철탑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M 토지에 식재된 수령 약 50년간의 소나무 10그루와 이 사건 N 토지에 식재된 수령 약 50년간의 소나무 약 20그루를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묘목만 심어 놓은 채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약 60%가 감소하게 된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고, 원고 등에게 위 토지가격 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에 대하여는 297,661,340원,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43,659,522원이나, 우선 아래와 같이 원고는 198,068,309원, 선정자들은 각 27,733,76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 1) 이 사건 M 토지 소나무 가액: 3,000,000원(= 1그루당 300,000원 × 10그루)
- 2) 이 사건 N 토지 소나무 가액: 857,142원 [= 소나무 가액 6,000,000원(= 1그루당 300,000원 × 20그루) × 1/7]
- 3) 이 사건 M 토지 가액 하락분: 167,334,545원 [= (이 사건 M 토지의 면적 46,017㎡ / 3.3㎡²) × 12,000원1)]
- 4) 이 사건 ○ 토지 가액 하락분: 4,636,363원 [= (이 사건 ○ 토지의 면적 3,570㎡ / 3.3㎡) × 30,000원 × 1/7]
- 5) 이 사건 N 토지 가액 하락분: 22,240,259원 [= (이 사건 N 토지의 면적 17,125㎡ / 3.3㎡²) × 30,000원 × 1/7]
- 6) 위 1) 내지 5)항 기재 금액의 합계: 198,068,309원

나. 선정자들

- 1) 이 사건 N 토지 소나무 가액: 857,142원 [= 소나무 가액 6,000,000원(= 1그루당 300,000원 × 20그루) × 1/7]
- 2) 이 사건 ○ 토지 가액 하락분: 4,636,363원 [= (이 사건 ○ 토지의 면적 3,570㎡ / 3.3㎡) × 30,000원 × 1/7]
- 3) 이 사건 N 토지 가액 하락분: 22,240,259원 [= (이 사건 N 토지의 면적 17,125㎡ / 3.3㎡) × 30,000원 × 1/7]
- 4) 위 1) 내지 3)항 기재 금액의 합계: 27,733,764원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실질은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4. 2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거나 기판력에 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송전탑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B 토지 및 이 사건 C 토지 각 지상에 설치된 송전탑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음을 들어 위 송전탑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L 송전선로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 또는 재료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자의 위와 같은 일시사용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며(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3항, 제7항),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송전탑 설치대상 부지에 접근하기 위한 임시통로 및 건설자재를 적치하는 작업장으로 이 사건 M 토지 및 N 토지를 일시사용하기 위한 이 사건 각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위 각 토지 인근 토지인 이 사건 B 토지 및 이 사건 C 토지 각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 위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B 토지 및 C 토지 각 지상에 설치한 송전탑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B 토지의 소유자는 김상욱이고, 이 사건 C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바, 원고 등은 위 각 송전탑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달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B 토지 및 이 사건 C 토지 각 지상에 설치된 송전탑의 철거를 구할 법적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송전탑 철거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송전탑 및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60% 가량 하락하였고, 이 사건 M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0그루와 이 사건 N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20그루가

벌목되는 등의 손해를 입은바, 이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이 입은 손해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 또는 재료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자의 위와 같은 일시사용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며(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 3, 7항),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제1항), 입목 등의 평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은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 벌기령을 말한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재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나무숲을 말한다) 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하고 있는 수종별 기준 벌기령을 살펴보면, 공·사유림의 소나무는 벌기령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벌목한 원고 등 소유 토지의 소나무의 수령이 모두 50년 가량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모두 벌기령을 초과한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나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그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송전탑 및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이 60% 가량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송전선이 원고 등의 소유 토지를 통과하거나 인근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가치 하락액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토지 시가 하락액 상당을 보상하지 않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 토지는 송전선 선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M 토지 및 N 토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송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손실보상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났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 시가 하락액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형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송전탑, 송전선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M 토지의 3.3㎡당 가액이 20,000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60% 상당액인 12,000원을 3.3㎡당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고, 역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송전탑, 송전선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 및 N 토지의 각 3.3㎡당 가액이 50,000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60% 상당액인 30,000원을 3.3㎡당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다.